



# 일본 하도급법 개정에 대하여

· 한국 공정거래협회 준법지원실 ·

## 하도급법 개정 포인트

1.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추가(제2조)  
~정보성과물의 작성, 의무제공, 금형제조
2. 서면교부의 시기에 관한 규정의 정비(제3조)  
~제조위탁 등을 행한 경우, 「즉시」 서면교부 필요  
단, (1) 정당한 이유로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기재를 요하지 않음  
(2) 이 경우 당해 사항의 내용이 정해진 후 즉시 당해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
3. 원사업자의 준수사항의 추가(제4조)  
~역부의 이용강제,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제공 요청, 부당한 즉시 재반환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강화(제7조)  
~재발방지조치 등의 권고, 권고의 공표
5. 벌금의 상한액의 인상(제10조, 제11조)  
~3만엔→50만엔 이하의 벌금  
(1) 서면의 교부 등 위반 및 서류 등의 작성·보존위반에 관한 죄(제10조)  
(2) 검사기피 등에 관한 죄(제11조)

역무의 위탁거래를 하도급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하도급법)의 대상에 추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하도급법 개정법이 지난 6월 12일 가결, 6월 18일 공포되었다.

일본의 하도급법은 1956년 제정이래 6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이 중 1963년, 1973년 및 1999년의 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제·개정에 따라 자본금기준을 변경한 것이고, 2000년 개정은 서면교부에 대한 전자적 방법의 도입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들을 제외한다면 금번의 개정은 1962년, 1965년의 개정에 이은 38년만의 개정이 된다.

금번 하도급법 개정의 경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역무의 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대서

하도급법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제정된 것으로, 현행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상품의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경제의 소프트화, 서비스화, IT화, 규제완화의 진전 등에 따라 역무의 거래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점과 역무의 위탁거래에 있어서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역무에 관한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의 공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에 역무 가이드라인을 책정·공표하고, 역무의 위탁거래에 있어서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더욱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즉시 대응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2002년 9월까지 기업거래연구회를 개최, 역무에 관한 하도급거래를 대상에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2002. 11. 27).

또한 「규제개혁의추진에관한제2차답신」(2002. 12. 12. 총합규제개혁회의)에서도 경제의 소프트화·서비스화라는 환경변화를 본다면 역무의 위탁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유효한 틀을 확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하도급법의 대상을 일정 역무의 위탁거래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된 점이다.

이를 근거로 법개정의 검토가 행해지고, 금년 3월 11일에 정부안으로 「하도급대금지불지연 등방지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안」이 제156회 국회에 제출되었다.

## 2. 개정의 개요

### (1) 대상이 된 하도급거래의 추가

금번의 개정에 의해 ① 정보성과물의 작성에 관한 하도급거래, ② 역무의 제공에 관한 하도급거래, ③ 금형의 제조에 관한 하도급거래가 새롭게 하도급법의 대상이 되었다.

#### 1) 정보성과물 작성위탁

정보성과물 작성에 관한 하도급거래(「정보성과물 작성위탁」)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하의 3개의 위탁거래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 ① 사업자가 업으로 행하는 제공의 목적인 정보성과물의 작성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② 사업자가 업으로 도급 받은 작성 목적인 정보성과물의 작성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③ 사업자가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행할 경우에 그 정보성과물의 작성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정보성과물」을 법 제2조제6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프로그램(제1호)

예를 들면, application soft, 제어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영화, 방송프로그램 기타 영상 또는 음성 그 밖의 음향에 의해 구성되는 것(제2호)

예를 들면, TV프로, 애니메이션, TV CM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문자, 도형, 기호 혹은 이러한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와의 결합에 의해 구성되는 것(제3호)

예를 들면, 디자인, 설계, 잡지광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④ 전항의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것(제4호)

현행법은 작성위탁의 목적이 되는 정보성과물을 제1호~제3호의 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향후의 기술진보 등에 따라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4호에 의해 정보성과물을 법령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기구에 내장된 제어 프로그램의 작성을 위탁할 경우에도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에 해당한다.

## 2) 역무제공위탁

「역무제공위탁」을 법 제2조제4항은 「사업자가 업으로 행하는 제공의 목적인 역무제공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역무」에는 일체의 모든 역무가 해당될 수 있으나, 역무제공위탁의 구체적인 예로는 운송, building maintenance(빌딩유지관리) 등에서의 하도급거래가 문제된다. 즉 「건설공사」의 하도급거래는 건설업법에 의해 하도급법과 유사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어 중복적인 규제를 추가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도급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3) 금형의 제조위탁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하는 「제조위탁」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 「물품의 반제품, 부품, 부속품 혹은 원재료」에 「이러한 제조에 이용되는 금형」이 추가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하는 금형의 제조위탁은 금형을 원사업자가 자기가 업으로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대상이 되나, 원사업자가 금형제조를 스스로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형은 부품과 같은 형태로 물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고, 또한 다른 물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동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써 제조에 이용하는 금형은 부품과 같은 형태의 취급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는 것은 위탁사업자가 자신이 스스로 제조하든지 또는 안 하든지에 관계없이 「제조위탁」으로서 하도급법의 대상이 된다.

## (2)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를 나누는 기준

현행의 하도급법은 규제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의 범위를 당해 사업자의 자본금의 액수에 의해 확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위탁하는 사업자의 자본금이 「3억엔」이 넘고, 위탁받은 사업자의 자본금 「3억엔」 이하의 경우, ② 위탁하는 사업자의 자본금이 「1천만엔」이 넘고, 위탁받은 사업자의 자본금 「1천만엔」 이하의 경우에 하도급법의 대상이 된다.

새롭게 대상이 되는 정보성과물 작성위탁 및 역무제공위탁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조위탁과 같은 형태로 자본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의 범위가 확정된다. 단, 자본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서비스업에 속한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자본금기준을 참고로 원칙적으로 「1천만엔」 및 「5천만엔」으로 하면서 법령으로 지정하는 것은 「1천만엔」 및 「3억엔」으로 하였다(제2조제7항 및 제8항).

「1천만엔」 및 「3억엔」을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법령으로 지정하는 것으로는 중소기업관계법령에서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자본금기준이 「3억엔」인 운수업, 소프트웨어업에 관련한 역무가 가정되고 있다.

## (3) 서면교부 시기에 관한 규정의 정비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제조위탁 등의 발주를 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자에 대해 「즉시」 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나 금번 개정에서는 서면교부 시기에 대하여 필요기재사항 중 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그 기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이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당해 사항의 내용이 정해진 직후에 당해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가 추가되었다(제3조제1항).

이것은 소프트웨어와 TV 프로그램 등의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등에 있어서는 발주시에 위탁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지적 등을 근거로 하였다.

따라서 발주시 서면의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발주시에 서면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당해 사항을 정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제3조에 위배하게 된다.

## (4) 원사업자의 준수사항의 추가

개정법에 있어서 역무에 관한 하도급거래가 대상이 되는 것 등을 근거로, 원사업자가 행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다음의 사항이 추가되었다(제4조).



- 1) 하도급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한 역무의 이용을 강제하는 것(제4조제1항제6호)  
현행법에서는 물건의 구입강제는 금지되어 있지만 역무의 이용강제는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추가된 것이다.
- 2) 금전, 노무 등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하도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 하는 것(제4조제2항제3호)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한다」라 함은 예를 들면, 결산대책의 협찬금,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여 제공케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 3) 하도급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후에 급부를 즉시 재반환토록 시키는 것 등에 의해 하도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제4조제2항제4호)

###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강화

하도급법에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권고를 하지만 그 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원상회복에 그쳐, 예를 들면 감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감액한 액수를 지불할 것」을 권고해야 하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이번의 개정에서는 원상회복과 더불어 재발방지조치 등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이 정비되었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필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제7조제4항(권고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뜻을 공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삭제되었다.

### (6) 벌금의 상한액 인상

서면교부의무위반 및 서류 등의 작성·보존의무 등 위반에 관한 죄, 그리고 검사기피 등에 관한 죄의 벌금 상한액이 50만엔으로 인상되었다(제10조 및 제11조).

### (7) 시행기일

공포일로부터 기산해서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법령에 정해진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내년 4월 이후 시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단, 앞서 기술한 (6)벌금의 상한액의 인상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으므로 이미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참고) 하도급법의 주요 개정 경위 등

년 도	개정규정	개정내용
1962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도급대금의 지불기일은 하도급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해서 60일 기 간내로 정해져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li> <li>•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발주서면의 기재사항에 「하도급대금의 지불기일」이 추가됨</li> <li>• 원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① 지불지연, ② 부당감액, ③ 구입강제, ④ 보복조치 의 금지가 추가됨</li> <li>• 원사업자가 지불지연을 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됨</li> </ul>
1963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 기준으로 1,000만엔에 대하여 5,000만엔의 기준이 추가됨(중소기업기본법 의 제정에 대응)</li> </ul>
1965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널회사 규제가 추가됨</li> <li>• 원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도급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① 유상지급원재 료 등의 대가의 조기결제 금지, ② 할인 곤란한 어음 교부의 금지가 추가됨</li> <li>• 지연이자 지불의 권고가 신설됨</li> <li>• 공정거래위원회는 「권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권고하는 것으로 한다」로 개정됨</li> <li>• 권고에 따른 경우의 독점금지법과의 관계가 명확화 됨</li> <li>• 제3조(서면 불교부 등)에 관한 벌칙규정이 추가됨(벌금상한액 3만엔)</li> </ul>
1973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기준 중 5,000만엔이 1억엔으로 인상됨(중소기업기본법에서의 중소기업의 정의변경에 대응)</li> </ul>
1999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기준 중 1억엔이 3억엔으로 인상됨(중소기업기본법에서의 중소기업의 정의 변경에 대응)</li> </ul>
2000	제3조 및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서면의 교부 및 거래기록의 보존을 위한 방법으로 전자적 방법이 인정됨</li> </ul>

※ 본 자료는 월간 「공정취인」 8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임.